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국 명	페이지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행정관리국	1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행정관리국	10

( 2011. 12. 5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명 금 길 ]**

## **1. 안 건 명**

-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행정관리국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7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제127조
- 「지방재정법」(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제36조

## 5. 2012년도 마포구 세출예산안 총괄

○ 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330,374,290	324,188,011	6,186,279	1.91
일 반 회 계	278,824,000	278,100,000	724,000	0.26
특 별 회 계	51,550,290	46,088,011	5,462,279	11.85
의료보호기금	381,000	351,000	30,000	8.55
마포농수산물시장	7,903,342	5,903,258	2,000,084	33.88
주 차 장	43,204,716	39,790,891	3,413,825	8.58
기반시설부담금	61,232	42,862	18,370	42.86

## 6.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총 계	99,641,213	35.74%	95,959,049	34.51%	3,682,164	3.84%
행정관리국	99,641,213	35.74%	95,959,049	34.51%	3,682,164	3.84%
총무과	84,587,203	30.34%	80,635,809	29.00%	3,951,394	4.90%
공보관광과	1,489,025	0.53%	1,489,719	0.54%	△694	△0.05%
자치행정과	7,632,352	2.74%	8,435,211	3.03%	△802,859	△9.52%
문화체육과	3,965,237	1.42%	3,410,440	1.23%	554,797	16.27%
생활안전과	1,219,204	0.44%	1,172,642	0.42%	46,562	3.97%
민원여권과	748,192	0.27%	815,228	0.29%	△67,036	△8.22%

**[검토보고]**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781억원 대비 약 35.74%에 해당하는 996억4,12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9억 5,904만9천원보다 36억8,21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

- 총무과의 세출예산액은 39억5,139만4천원이 증가한 845억 8,720만3천으로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정책사업인 창의 혁신의 조직문화 조성 사업에서 신규증액으로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을 위한 대표단 석경산구 방문 및 카츠시카구 방문 여비 1,560만원과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등 344만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사업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구청사외벽 방수공사비 1억1,12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인 부조급여비용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퇴임직원격려를 위한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9천만원이 증액된 1억2백만원, 직원보수인상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 46억9,689만6천원이 증액된 757억5,819만9천원, 공단 경상전출금인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및 종합청사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위탁비로 2억 3,239만9천원이 증액된 12억9,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관용차량 구매완료 등에 따라 일반 운영비 1억192만6천원이 감액된 1억1,892만6천원,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일체감 훈련의 격년제 실시로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1,030만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문화체험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선진평생학습 도시 방문 미실시에 따라 2,960만원이 감액된 1억2,240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소임차료 2,617만원이 감액된 5,040만원, 미취학 아동보육지원료 1,080만원이 감액된 3억 1,32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464만2천원이 감액된 4억6,399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경비 1,560만원이 감액된 6억636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보관광과의 세출예산액은 69만4천원이 감액된 14억 8,902만5천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 중 정책사업인 구정 홍보 기능 강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인 신문, 잡지 등 구독료 3,702만8천원이 증액된 4억6,838만2천원, PCRМ 회원모집 신청서 제작 및 PCRМ DB보안 암호화 추진비 1,850만원이

증액된 2,525만원, 민간위탁금인 인터넷방송 운영비 1,500만원이 증액된 3억2,300만원, 자산취득비인 방송용 촬영카메라 및 방송용 HDV - VCR 구입비 535만5천원이 증액된 3,424만5천원, 신규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일곱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코스개발에 따라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구정홍보물제작 및 홍보관 운영에서 홍보영상물 제작 완료 및 신규 화보집 제작비 상쇄로 인하여 5,553만원이 감액된 3,997만8천원이 편성되었음

-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285만9천원이 감소한 76억 3,235만2천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 중 신규증액으로는 정책사업인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사업에서 대흥동 소재 우리마포복지관 일반관리비 2,715만1천원, 도화동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비 6천만원,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관리비 2,47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2,207만1천원이 증액된 12억1,053만9천원,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72만8천원이 증액된 3,5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상하반기 각2회 50명 운영에 따라 6,696만3천원이 감액된 8,453만7천원,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5천만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 주말 자치회관 개방에 따른 자치회관도우미 실비지원 1,104만원이 감액된 312만원, 민간경상보조비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억원이 감액된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이 감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액은 5억5,479만7천원이 증액된 39억6,523만7천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 중 신규사업으로는 정책사업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2002 월드컵 10주년 기념행사비 등 4천만원, 중동 경로당 개보수비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경상보조 마포문화원 사업지원비 1천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4억9,915만4천원이 증액된 19억9,800만원, 마포구 체육단체 민간경상보조비로서 마포구민 건강걷기 대회 등 1,200만원이 증액된 1억4,350만원, 체육바우처사업 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용품지원비 7,644만8천원, 공단 경상전출금인 영리체육관 시설관리 위탁비 2억2,674만9천원이 증액된 5억1,028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비인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1억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 민간위탁금인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비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285만4천원 민간행사보조비인 서울 와우페스티벌 축제비 1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생활안전과의 세출예산액은 4,656만2천원이 증가한 12억 1,920만4천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정책사업인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위한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 2,227만2천원이 증액된 2,370만원, 기금 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8,550만2천원이 증액된 5억9,503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6,155만9천원이 감액된 3억2,891만1천원이 편성되었음

-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6,703만6천원이 감소한 7억 4,819만2천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사업으로서 정책사업인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구현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62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내용은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3,237만1천원이 감액된 3억3,042만3천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전산 개발비 등 3,101만9천원이 감액된 2,942만1천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주요 증액원인은 공무원 봉급 3.5% 인상에 따른 인건비 26억7,714만1천원과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19억1,682만원 등으로 내년도 증액분 46억9,689만6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20%,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 운영비를 25% 감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과거 동종사업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 삭감된 2,600만원의 직원후생 복지예산은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이 직원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치행정과에 동청사 긴급개보수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수요조사와 산출기초를 토대로 비용을 계상함은 물론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연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의 실적평가 및 여론 수렴을 통한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은 단체의 성격, 공익성, 구정발전의 기여도, 자립도 등 종합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한 신중한 선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의 사전 예방이 필요함

-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마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과 영리체육관 시설관리위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타당성 검토와 예산 집행 및 정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감독관리 강화가 요구됨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위해 예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 안 건 명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행정관리국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7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제127조
- 「지방재정법」(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제36조

# 5.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

○ 현황

(단위:천원)

기 금 명	2011년도 말 현재액 ㉠	2012년도 기금운용			2012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	
재난관리기금	1,247,081	626,216	530,420	95,796	1,342,877

## [검토보고]

###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용자상환금, 이자 등이 되겠으며, 201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9억 7,329만7천원으로 수입재원은 출연금 5억9,503만7천원, 예치금회수 3억4,708만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117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비 5억2천만원, 용자금 1천만원과 예치금 4억4,287만7천원이 되겠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기금의 사용에서 재난사전대비 또는 응급복구 등 합목적적인 사용 여부와 기금관리에서 예치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